

의안번호	제3117호
의결	2026. . .
연월일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6. 7. 10.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17호
----------	--------

제출연월일: 2026. 7. 10.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신설된 상위법의 제명 반영(안 제1조 및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 제16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17495(2026. 4. 17.)호]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901호

가) 예고기간: 2026. 4. 21.~2026. 5. 12.(21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보호법」 제33조”를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로 한다.

제2조 중 “「산림보호법」”를 “「산림재난방지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고성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 ----- 「산림재난방지법」 -----.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라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추가 재정 수반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

작성자: 녹지공원과장 김 주 화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22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재난”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한다.
2.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3.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4. “토석류”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석류를 말한다.
5.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6. “산림재난피해지”란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산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7. “복구”란 산림재난피해지를 인공구조물 설치와 식물의 파종·식재 등을 통하여 훼손 이전의 상태로 안정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8. “산림재난방지”란 산림재난으로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피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불을 예방·대비·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불방지”라 한다)

나.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를 예방·대비·대응하고 산사태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사태등방지”라 한다)

다.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림병해충 예찰”이라 한다)과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림병해충 방제”라 한다)

9.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22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나.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을 포함한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10. “산림재난방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을 말한다.

11.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란 산림재난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 예측과 피해저감 효과를 위하여 기후·기상 등 자연 정보와 거주·교통 등 생활적 정보 및 지형·임상·토질 등 산지 정보를 활용하여 위험도를 분석·예측·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산림재난 위험지도”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와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산림재난 위험등급을 표현한 지도를 말한다.

14.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란 산림재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가공·저장·검색, 표출, 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제16조(산불 예방 등) ①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이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대비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

방지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방지에
필요한 장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⑦ (생략)